

주변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 북평일반산업단지	송정일반산업단지
○ 위 치 : 동해시 북평동 일원	○ 위 치 : 동해시 송정동 170 2번지(국제동해항 1분 이내)
○ 면 적 : 2,340천㎡ (국가 1,625천㎡, 지방 715천㎡)	○ 면 적 : 323천㎡
○ 분 양 가 : 81,000원/㎡ ※ 일부지역상이	○ 분 양 가 : 191,999원/㎡ (분양면적: 51,778.6㎡)
○ 입주업종 : 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체(공해유발 업종 제외)	○ 입주업종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입주업종 맞춤형 변경가능

산업기반시설 및 입지현황

항 목	세 부 사 항	추진계획 및 전망	
교 통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동해고속도로(서울~동해) 2시간 30분 • 7호선(동해~부산) 3시간대 • 38호선(평택~제천~동해) 3시간대 • 42호선(안산~진부~동해) 3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 영동고속도로(서울~원주) : 2013년 완공 •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 2015년 완공 • 38호선, 42호선 : 2014년 4차로 완공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영동선(수도권, 내륙연결) • 철도인입으로 제품 수송용이 • 동해역 철도CY(하치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강릉 고속복선전철 건설 (2015년 완공) : 서울~강릉(1시간대) • 포항 ~ 동해 철도건설(2016년 완공)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15선좌, 하역 37,072천톤/연 • 동해~블라디보스톡~사카이미나토 (크루즈훼리 항로운행) • 러시아, 일본 정기항로 활용 수출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 사카이미나토(주1항차) : 12~14시간 - 동해 ~ 블라디보스톡(주1항차) : 14~16시간 - 적재 : 여객480명, 컨테이너 130TEU, 승용차 66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추가개발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전용부두(3선석) 건설 ※ 다목적부두 7만톤급(2선석), 컨부두 5만톤급(1선석) - 하역시설 확충(갠트리크레인 2기) - 컨테이너검색기(2기) 설치 - 물류유통센터 조성 - CY, 인입철도, 인터넷 화물터미널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327km) : 4시간 • 김포국제공항(292km) : 3시간 30분 • 원주공항(152km) : 2시간 • 양양국제공항(59km)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양국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국제노선 개척 노선 다변화 - 편의시설 확충(면세점 개장 등)
인력수급	• 고교 27개교 15,700명, 대학 5개교 24,700명		
산업기반	• 동해화력발전소(20만kwX2기), 공업용수(2만톤/일)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 • 폐수중말처리장(6,500톤/일)		

주요 교통망



동해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국제동해항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donghae>
 240-230 강원도 동해시 공단로 177 (구호동247)
 T. 033) 522-6113, 6114
 F. 033) 522-6062

강원도
 투자유치담당관실 · 글로벌사업단
<http://www.provin.gangwon.kr>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15)
 T. 033) 249-3527, 2082
 F. 033) 249-4101, 4011

동해시
 기업지원과
<http://www.dh.go.kr>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7 (천곡동 806)
 T. 033) 530-2171
 F. 033) 530-2719

Donghae Free Trade Zone

환동해권 산업·물류의 중심,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요충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안내

* 즉시입주가 가능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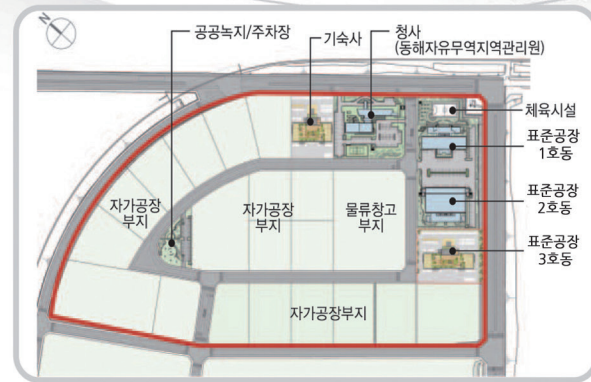
개요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공단로 177(구호동)
면 적 : 247,734㎡

구분	면적(㎡)
산업용지	181,921
자가공장	163,484
표준공장	18,437
물류용지	19,276
공공시설용지	46,537
합계	247,734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동해자유무역지역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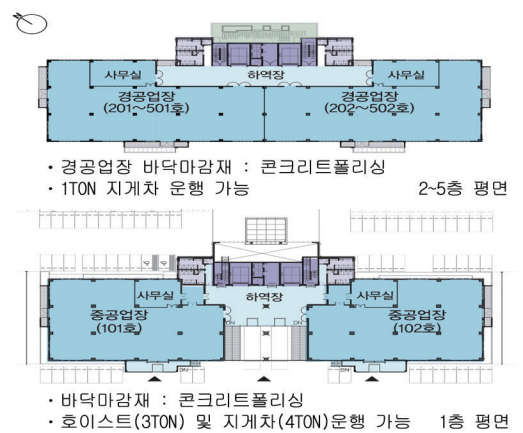
입주안내

월 임대료

자가부지 34원/㎡, 표준공장 1호동 341원/㎡, 표준공장 2호동 300원/㎡, 표준공장 3호동 328원/㎡
 • 기숙사(4층, 23세대) : 즉시 입주가능 (임대료 : 월 543원/㎡)
 • 임대기간 : 장기(50년) 임대방식(필요시 50년 연장가능)

표준공장 3호동 개요

건축면적 2,508.94㎡
연면적 12,207.54㎡
규모/층고 1층/8.5m, 2~5층/4.6m
주차계획 120대
엘리베이터 승객용2대, 화물승강기(4TON) 2대
호이스트용량 최대 3TON 설치 가능(1층)



임대면적

단위 : ㎡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대면적
101	827	327	1,154
102	827	327	1,154
201	860	340	1,200
202	860	340	1,200
301	860	340	1,200
302	860	340	1,200
401	860	340	1,200
402	860	340	1,200
501	860	340	1,200
502	860	340	1,200
합계	8,534	3,374	11,908

입주자격

구분	기준	내용
국내기업	수출주목적제조업	입주허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중견기업은 100분의 40, 지식서비스산업은 100분의 5이상)
	수출입거래주목적도매업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1인당) 이상이고,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기업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One-Stop 행정지원 서비스 : 입주상담 → 외국인투자신고(즉시수리) → 입주신청 → 입주허가(7일 이내) → 공장건축허가(7일 이내)

조세감면인센티브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상이)	-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5~15년간, 50~100%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10년)	- 제조업종 500만불(미화) 이상 투자시 75% 무상 - 부품·소재산업 500만불(미화) 이상 투자시 100% 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 100만불(미화) 이상 투자시 100%무상
입주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 물류비 지원 : 물류비의 50%,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연 2회 분할 지원) - 폐수처리비 지원 : 폐수처리비의 50% (연4회 분할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 부지매입 보조금(임대료 포함) : 최대 120억 범위내 지원 - 설비투자지원(투자보조금) : 최대 20억 범위내 지원 - 본사이전보조금 : 최대 5억 범위내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이전 전·후 30인 이상 기업 ※ 타시도 이전기업 : 타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20억 이상 투자 기업 (북평산업단지 : 10인 이상 또는 10억)
신·중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U턴 기업) 보조금 지원	- 최대 20억 범위내 지원 ※ 신·중설기업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 중소·중견기업중 지역전략산업, 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 10억이상 투자 ※ 국내복귀기업(U턴 기업)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시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 100억 범위내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 7백억원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
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2~5% 범위내 이차차액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최대 35억 범위내 지원 - 경영안전자금 최대6억 범위내 지원 - 기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타 인센티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보류, 부가가치세 ZERO세율 적용, 역외직업 허용

※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